



## 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

ANDREW M. CUOMO  
주지사

DENISE M. MIRANDA  
행정 책임자

이사 및 시설 직원: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Justice Center의 Surrogate Decision-Making Committee(SDMC) Program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긴급하지 않은 주요 의학적 처치에 대한 대리 의사결정이나 시한부 의사결정이 필요한지 입증하는 사례 패키지의 신중하고 완전한 준비를 하면 더 시기적절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개인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사례 패키지에는 다음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다음에 대해 작성한 SDMC 양식:
  - 주요 의학적 처치 또는
  - 시한부 치료
- (b) 최근의 연례 신체 검사
- (c) 검토 중인 의학적 진단 및 시술에 대한 상담, 전문의 상담
- (d) 검사, X레이, 진단 검사, 의사 진행상황 소견, 호스피스 입원 평가(해당되는 경우)

주요 의학적 처치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개인은 의학적 상태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공청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시한부 치료를 하려는 경우, 개인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의학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패널 구성원이 공청회 전에 개인을 방문합니다. 개인의 의학적 기록을 공청회에 가져와야 합니다. 개인의 일반 신체 기능과 의학적 상태를 모두 잘 아는 직원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패널의 제기하는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작성한 사례 패키지는 다음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NYS 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  
SDMC Program  
401 State Street, Schenectady, NY 12305.

사례 패키지를 신속하게 팩스로 보내도록 안내를 받는다면 원본을 우편 발송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례가 어떠한 이유로든 기각된다면 저희 사무소로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질문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SDMC 담당자에게 (518) 549- 0328 또는 이메일 주소 [SDMC@justicecenter.ny.gov](mailto:SDMC@justicecenter.ny.gov)로 연락해 주십시오.